



LPG용기 재검사기한 연장 건의

한국LP가스공업협회

우리회는 지난 98년 산자부와 가스안전공사에 LPG 용기의 재검사기한을 연장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으며 가스안전공사가 두차례에 걸쳐 용기도색 부식여부, 프로텍터 및 스커트 손상여부 등 용기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20kg용기의 최초 재검사기한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해도 좋다는 내용으로 산자부에 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.

최근 협회에서 산자부에 다시 건의한 내용을 게재한다.

검토배경

현행 LPG용기 재검사 기한이 용기의 내구성등에 비해 너무 짧아 자원낭비가 되고 있음은 물론 재검사 비용의 부담가중으로 충전업계의 적자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부작용이 많아 재검사기한 연장 필요성이 대두됨.

■ 연행 용기재검사 기한

- 고압가스법시행규칙 제39조 별표22에 의거하여
경과년수 15년미만 용기는 3년마다
경과년수 15년~20년 용기는 2년마다
경과년수 20년 이상 용기는 1년마다
- '96. 6. 30까지는 통산부고시(91-56호)로 최초 재검사는 4년으로 운용하였음

■ 재검사기한 연장 필요성

- ① 용기제조기준 강화와 기술개발 등으로 용기품질이 향상되었음
 - 3P에서 2P로 바뀌어 용접부위가 감소되므로 불량발생률이 현저히 감소
 - 스킨두께를 몸통보다 두껍게 하여 스킨의 찌그러짐을 감소시킴
 - 용기내부에 인산염 피막을 입히고 도장두께를 보강하여 부식을 방지하고 있음
 - 제조공정의 자동화로 불량률 감소
- ② 용기재검사기준 강화와 체적거래제 확산으로 내구성 향상
 - 도장 개선으로 부식 방지
 - 체적거래제 확산으로 소요용기가 많아진 (twin용기)반면 회전율이 떨어져 용기내

구성은 향상

- ③ 용기사고의 주원인인 밸브가 구조개선(스핀들 등 개선)으로 품질이 향상되었음
- ④ 잦은 재검사로 인해 용기의 내구성 저하와 업계의 비용부담 과중 문제 발생
- 체적거래제 확산으로 소요용기가 많아져 재검비용 증가

■ 일본의 사례

일본의 경우 '98. 4 법개정(용기보안규칙)으로 재검사기간을 연장하였음

종 전	현 행('98. 4 이후)
경과년수 8년 미만 용기는 4년	경과년수 20년미만 용기는 5년
8~20년 3년	20년이상 2년
20년 이상 1년	

■ 안전공사 검토(안)

- 20kg용기의 경우 최초 재검사기한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 가능

■ 우리회 의견

- 안전공사 의견과 동일